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91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조계원・이기헌・주철현

김우영 · 김문수 · 윤준병

박지원 • 민병덕 • 양부남

임오경・양문석・박해철

민형배 • 정진욱 • 채현일

김윤덕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직장별로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이나 역할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여 직장 체육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정한 기준 제시가 필 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운동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 2. 운동경기부의 체육지도자, 선수 등의 채용이나 재계약 및 보수 책정
- 3. 운동경기부의 우수 선수 선발 및 표창

- 4. 그 밖에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제5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은 직장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 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 야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지방자치단 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위원회 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 만,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관리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체육 진흥관리위원회가 직장운동경 기부운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신 설>

⑤ 제2항부터 <u>제4항까지의</u>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대신하거나	직	장운동경	흥기부운
영관리위원회	의	기능을	포함히
여 운영할 수	- 0)	(다.	

- 1. 운동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2. 운동경기부의 체육지도자,
 선수 등의 채용이나 재계약
 및 보수 책정
- 3. 운동경기부의 우수 선수 선 발 및 표창
- 4. 그 밖에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제5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 부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및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 성하되, 위원은 직장 체육에 관 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u>7</u>	 <u>제6항까</u> 기	<u> </u>